

# 포 향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33호 2009. 6. 16(화)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포 향 시

### ◀ 조 려 ▶

-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(제940호) ..... 2
-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제941호) ..... 10
-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(제942호) ..... 15
-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(제943호) ..... 21
-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44호) ..... 23
-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945호)..... 27
-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제946호) ..... 30

### ◀ 공 고 ▶

- 공 인 공 고(제2009-727호) ..... 33
-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(제 2009-729호) ..... 35
- 第156回 浦項市議會(第1次 定例會) 集會公告(의회공고 제5호) ..... 40

회								
람								

**조 례**

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년 6월 16일

포항시 조례 제 940 호

**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**

**제1장 총칙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에너지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포항시·사업자·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,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 원칙)** 포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.

- 1.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·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
- 2.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
- 3.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
- 4. 국가 및 국내·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
- 5.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에너지기본법」 제2조 및 「경상북도 에너지기본 조례」 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·책무

**제4조(시의 책무)** ① 시는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 에너지 실행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.

③ 시는 학교·시민·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④ 시는 시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**제5조(사업자의 책무)**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·가공·유통·판매·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,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

④ 사업자는 시민·시민단체·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

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.

**제6조(시민의 권리 및 책무)**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.

1.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.
2.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·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.
3.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4.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5. 시민단체는 시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.
6. 시민단체는 제5호의 시책에 대한 감시·평가·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)** ①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,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에너지 계획

**제8조(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)**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포항시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행계획(이하 “합리화 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가.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추진계획
- 나.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

- 다.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
- 라.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

**제4장 에너지위원회 운영**

**제9조(설치)** 시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·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에너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, 당연직위원은 부시장, 전략사업추진본부장, 경제산업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,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 계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미래산업팀장으로 한다.

**제11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
2.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
3.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
4.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

**제12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3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**제14조(준용)**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 한다

### 제5장 부문별 에너지시책

**제15조(공공부문 에너지시책)**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,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·관리
2.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(증·개축 포함)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, 소비 에너지를 신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급하여야 한다.
3.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,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 사용
4.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·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

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.

1.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
2.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
3.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
4.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
5.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·토목공사를 계획·시행함에 있어

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산업부문 에너지시책)** ① 시장은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건물부문 에너지시책)**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·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·감독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열·광,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건축물 개·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 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연면적 3,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- 1. 업무(청사), 의료, 숙박, 위락, 판매, 운동시설
- 2. 문화, 교통, 복지, 관광휴게시설

**제18조(수송부문 에너지 시책)** ① 시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 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,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무동력 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, 보관소 등 이용 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내 혼잡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**제6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**

**제19조(신 재생에너지 보급)**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 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)**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,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재정지원 등)**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·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2조(표창 등)**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·시민단체·기업·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.  
② 수상자에게는 상패·메달·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,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.

**제2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정이유

「에너지기본법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,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·책무 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- 시장의 책무, 사업자의 책무, 시민의 권리와 책무,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

나. 에너지 계획 (안 제8조)

-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수립 및 시행

다. 에너지위원회 운영 (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)

-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·심의·조정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

라. 부문별 에너지시책 (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)

- 공공부문 에너지시책, 산업부문 에너지시책,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,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

마.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(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)

- 신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위한 제반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 시 장려
- 신 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소요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강구
-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-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
- 에너지시책에 공적이 큰 시민·시민단체·기업 등에 포상 또는 표창

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**포 항 시 장 박 승 호**

2009년 6월 16일

포항시 조례 제 941호

**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**

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” 를 “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삭제 한다.

**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**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본다.

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**제11조의3제2항 중** “제11조제1호” 를 “제11조” 로 하고 제3항 중 “당연 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” 를 “당연히 복직된다” 로 한다.

**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**

**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** 시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〈 신 설 〉</u></p> <p><u>제11조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</u></li> <li><u>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</u></li> </ol> <p><u>제11조의2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.</u></p>	<p><u>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.</u></li> <li><u>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u></li> </ol> <p><u>제11조의2(삭 제)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생 략)           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 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 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<u>당연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</u></p>	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<u>제11조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③ -----            -----  <u>당연히 복직된다.</u></p>
<p><u>제12조(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)</u>            ① <u>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 유 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 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 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 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 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</u></p>	<p><u>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시장은 일반 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 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 무 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 적평 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

**1. 개정이유**

특수경력직공무원(별정직공무원)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('08. 12월)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**가. 지방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**

○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
**나.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(안 제11조)**

○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

**다.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마련(안 제12조)**

○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**포 항 시 장 박 승 호**

2009년 6월 16일

포항시 조례 제 942호

**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**

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” 를 “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)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·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건축주” 라 한다)에게 권장 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하

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 1 3호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3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 및 관람장
4. 판매시설
5. 운수시설(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
6. 의료시설 중 병원
7. 업무시설
8. 숙박시설
9. 위락시설
10. 방송통신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제3조제1항 중 “영 제24조” 를 “영 제12조” 로 하고, “법 제11조” 를 “법 제9조” 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영 제24조” 를 “영 제12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
2.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: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

제7조 중 “영 제24조” 를 “영 제14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)</u>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, 전 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별표1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공동주택(다만,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)</u></li> <li>2. <u>업무시설</u></li> <li>3. <u>숙박시설</u></li> <li>4. <u>판매 및 영업시설</u></li> <li>5. <u>위락시설</u></li> <li>6. <u>공공용 시설중 방송국, 통신용 시설</u></li> <li>7. <u>의료시설중 병원</u></li> <li>8. <u>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</u>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)</u>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,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(이하 “건축주” 라 한다) 에게 권장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2조의2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</u>  <u>법 제9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)            ①시장은 <u>영 제24조</u>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건축주” 라 한다)에게 <u>법 제11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<u>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  1. <u>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</u>            2. <u>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</u>            3. <u>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 및 관람장</u>            4. <u>판매시설</u>            5. <u>운수시설(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</u>            6. <u>의료시설 중 병원</u>            7. <u>업무시설</u>            8. <u>숙박시설</u>            9. <u>위락시설</u>            10. <u>방송통신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)</u></p> <p>제3조(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등)            ①----- <u>영 제12조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u>법 제9조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b>제5조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</b> 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 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1천분의 1이상</p> <p>2.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: 1천분의 5이상</p> <p><b>제7조(설치)</b>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, 건축, 환경, 공간디자인,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포항시미술장식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5조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</b>  영 제12조 -----  -----  -----</p> <p>1.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</p> <p>2. 영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: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</p> <p><b>제7조(설치)</b> 영 제14조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</p>

**1. 개정이유**

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조항의 변경 및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

**2. 주요 내용**

- 가.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조항의 변경 및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추가 (안 제2조)
- 나.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에 관한 조항의 변경 (안 제3조)
- 다.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조항의 변경 (안 제5조)
- 라. 포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의 변경 (안 제7조)

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년 6월 16일

포항시 조례 제 943호

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

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 중 “1,000분의 1.5” 를 “1,000분의 1.4” 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기한)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1조(세율)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 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<u>1,000분</u> 의 <u>1.5</u> 로 한다.	제91조(세율)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 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<u>1,000분</u> 의 <u>1.4</u> 로 한다.

### 1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 개정( '09.2.6)에 따라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,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퍼센트,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
-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, '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1.5에서 1,000분의 1.4로 인하 함

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포항시장 박승호

2009년 6월 16일

포항시 조례 제 944 호

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의사자”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의상자”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

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1.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
2.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

**제4조(지원사업 등)** ①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.
2.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 이라 한다)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.

가. 1급~2급 : 6백만원 이하

나. 3급~4급 : 4백만원 이하

다. 5급~9급 : 2백만원 이하

3.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예우 등)**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포항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
2.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



- 3.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
- 4.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지원신청)**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준용 등)**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안이유

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포항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의사자 및 의상자란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
나. 적용범위(안 제3조)

- 포항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
-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

다. 지원사업 등(안 제4조)

- 의사자 특별위로금 : 1천만 원 이하
- 의상자 특별위로금 : 1급 ~ 9급까지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지급
  - 1급 ~ 2급 : 6백만원 이하      - 3급 ~ 4급 : 4백만원 이하
  - 5급 ~ 9급 : 2백만원 이하

라. 예우 등(안 제5조)

- 「포항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
- 시 단위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
- 포항시사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등

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**포 항 시 장 박 승 호**

2009년 6월 16일

포항시 조례 제 945 호

**포항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, 취미활동,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경로당”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, 취미활동,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4조(경로당 지원)**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경로당 시설의 개·보수비
- 2.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·난방비
- 3.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
- 4.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

② 시장은 이용인원, 시설규모,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
- 2.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
- 3.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

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**제6조(프로그램 개발 등)**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설관리)**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·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원금의 반환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- 1.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2.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
-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

제9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- 1. 시설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
- 2.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

제10조(준용)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「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정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경로당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지원대상 경로당과 경로당 지원사업,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- 다. 프로그램의 개발, 시설관리, 지원금 반환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
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년 6월 16일

포항시 조례 제 946호

**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7】

##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(제12조제1항관련)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위락시설	○ 시설면적 67㎡당 1대(시설면적/67㎡)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(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공공용시설중 방송국	○ 시설면적 100㎡당 1대 (시설면적/100㎡)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)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	○ 시설면적 200㎡당 1대 (시설면적/200㎡)
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○ 시설면적 50㎡초과 150㎡ 이하 : 1대 ○ 시설면적 150㎡초과 :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 [1+{(시설면적-150㎡)/100㎡}]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중 오피스텔	○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. 이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.
6. 골프장,골프연습장,옥외수영장, 관람장	○ 골프장 : 1홀당 10대(홀의 수×10) ○ 골프연습장 : 1타석당 1대(타석의 수×1) ○ 옥외수영장 : 정원 15인당 1대(정원/15인) ○ 관람장 : 정원 100인당 1대(정원/100인)
7. 그 밖의 건축물	○ 시설면적 300㎡당 1대. 다만,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은 500㎡당 1대(시설면적/500㎡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<b>【별표 7】</b>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(제12조제1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시 설 물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설 치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~ 6 (생 략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. 그 밖의 건축물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○ 시설면적 300㎡당 1대. 다만,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은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물	설 치 기 준	1 ~ 6 (생 략)	(생 략)	7. 그 밖의 건축물	○ 시설면적 300㎡당 1대. 다만,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은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	<p><b>【별표 7】</b>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(제12조제1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시 설 물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설 치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~ 6 (현행과 같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. 그 밖의 건축물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○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 500㎡당 1대 (시설면적/500㎡)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물	설 치 기 준	1 ~ 6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7. 그 밖의 건축물	○ ..... ..... ..... 500㎡당 1대 (시설면적/500㎡)
시 설 물	설 치 기 준												
1 ~ 6 (생 략)	(생 략)												
7. 그 밖의 건축물	○ 시설면적 300㎡당 1대. 다만,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은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												
시 설 물	설 치 기 준												
1 ~ 6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7. 그 밖의 건축물	○ ..... ..... ..... 500㎡당 1대 (시설면적/500㎡)												

**1. 개정이유**

철강산업도시인 우리지역 특성상 공단지역의 부설주차장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현행 350㎡당 1대를 500㎡당 1대로 완화.



공 고

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합니다.

포 항 시 장 박 승 호

2009. 6. 15

공 인 공 고

포항시공고 제2009-727호

- 1.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: 2009. 6. 16
- 2. 등록 및 폐기사유 : 공인 마모로 인한 개각 등
- 3. 신조 공인명 및 인영 : 붙임 1
- 4. 폐기 공인명 및 인영 : 붙임 2

붙임 1. 신조공인

공 인 명	규 격	인 영	비 고
포 항 시 남 구 오 천 읍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공인마모로 개각

붙임 2. 폐기공인

공 인 명	규 격	인 영	비 고
포 항 시 남 구 오 천 읍 장 인	한글전서체 2.1Cm정방형		공인마모로 폐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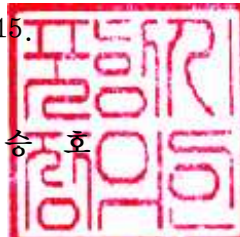
포항시 공고 제 2009 - 729호

###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(폐차)공고

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(150만원이하의 범칙금)되며,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009. 06. 15.

포항시장 박승호



- 1. 공고기간 : 2009. 06. 15. ~ 2009. 06. 30. (15일간)
- 2. 폐차장소 : 신진폐차장, 포항종합폐차장, 동해지구종합폐차장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홍해종합폐차장, 태평양종합폐차장(주), 대원종합폐차장
- 3. 폐차예정일 : 공고기간 종료 이후
- 4. 문의처 :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☎(054)270-3643
- 5.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.
- 6. 강제처리대상차량 : 붙임 내역참조

공고처리 내역

◆ 총건수 : 18 ◆ 공고기간 : 2009-06-15에서 2009-06-30까지

관리번호	자동차번호		차 명 주민번호	주 소	방치장소		이해관계
	성 명	성 명			방치장소	보관장소	
2009-55	전남93가5758 김영수	포터슈퍼캡 560307-*****	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210번지 6/1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-6 신진폐차장 내에	장성군정상은, 환보		
2009-56	전남91나2276 정대영	와이드봉고더블 캡 700417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 리 325-10(11/11) B동 102호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-6 신진폐차장 내에	포항남부경찰서경교		
2009-57	울산70녀4980 이기명	싼타모플러스 700328-*****	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6번지 성 호아파트 103-909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-6 신진폐차장 내에	울산남부경찰서경교 삼성캐피탈(주)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2002가단14258 포항시청교행 울산광역시남부경찰서경교 포항시북구청 건교 현대캐피탈(주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4단지 울산동부경찰서경교 울산광역시 동구정지세 흥성군정지경 울산서부경찰서경교		
2009-58	서울85녀7284 김새로미	코란도11-벤 860730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1호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-6 신진폐차장 내에	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남부지사직관 서울특별시 중서초구정산한, 세이, 교행, 기한 서울특별시중구경찰청		
2009-59	서울81모2850 이승웅	와이드봉고킹캡 440817-*****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090번 지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-6 신진폐차장 내에	서울특별시강서구청환위, 교행, 세무, 주차 서울 강서경찰서교행 서울특별시강동구청교행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수		

2009-60	부산30누6394 한길영	칼로스 1.5S0HC 750226-*****	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98번지 1호 23/6 주공아파트 205동 1509호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-6 신진페차장 내	상성카드(주)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87번지2003카단27309 부산광역시 북구청세무, 교통부 산 북부경찰서경교 LG카드(주)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
2009-61	경북31라2429 김기영	수퍼살롱2.0AT 640824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9번지 3호 2/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-6 신진페차장 내	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남구청세무,건교 포항시북구청세무 포항남부경찰서교통
2009-62	경북29가3165 윤중환	쏘나타111.8 820425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10번지 17호 22/1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-6 신진페차장 내	포항시청교행 포항북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 LG카드(주)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
2009-64	경북27다1627 한준호	프리스1.8AT 780308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97번지 20호 21/3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-6 신진페차장 내	포항시청교행 포항남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,건교
2009-65	경기46구4129 모홀리인터내셔널(주)	에스페로1.5AT 130111-*****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59번지 6호 터미널타워빌딩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-6 신진페차장 내	수원시관선구청세무 수원시팔달구청세무, 환위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
2009-66	65라6532 한연희	아벨라 591007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40번지 27호 39/3 상도주막 나눔 44호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764-6 신진페차장 내	포항시남구청사회 부산광역시동구청교통 부산광역시연제구청교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교통 부산진구청경찰서교통 부산광역시청교관 진해시청세무,교관 포항시북구청건교,세무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환위 LG카드(주)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단지

2009-67	61다3373 정상현	엘란트라도매 트 700724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141 번지 4/1 득량아파트 1동 209호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-6 신진폐차장 내에	포항시청정소, 환위 포항시남구청건교, 세무 포 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, 세 무
2009-68	10러16895 박일도	쏘나타투1.8 671024-*****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58번지 1 호 5/8 쌍용아진그린타운 105동 1307호	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 천리 764-6 신진폐차장 내에	울산광역시북구청교통, 지세, 환위 울산중부경 활서경교 포항시남구청건교 근로복지울산지사 납부
2009-71	경북8다2496 이환이	농촌형다목적트 럭세레스 490502-*****	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196번지	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-8 동해지구종합폐차 장내에	경주시청환경, 강동, 교행
2009-73	대전30구1127 김시경	엘란트라 560104-*****	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99번지6 호 동부썬빌 503호	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-8 동해지구종합폐차 장내에	대전광역시서구청환경, 세무, 교통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차등 대전서부경찰서경교 대전 둔산경찰서경교
2009-75	54누5917 김진영(중부자동차상 사)	그랜저 650801-*****	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용산블 루빌타운 103-305	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 산리 147번지 흥해소망 교회 옆 도로상에	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청교행 포항 북부경찰서교통 부산광역시중구청교통 포항시 남구청건교 대전광역시서구청교통 대전광역시 청대교 대구광역시달서구청환경, 장수 포항시북 구청건교
2009-76	대구2도7585 박철완	프리스1.8AT 590219-*****	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96번지 18호 6/2 203호	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11리 375-6 모건물 주 차장내에	대구광역시중구청지교, 교행, 세무 경산시청교 행 대구광역시달서구청교통, 세무, 장수, 환경 장 성카드(주)유석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-7사건2004카단13256 대구광역시서구청교통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차 대구서경찰서경 교 대구광역시남구청지교, 세무

2009-81	경북27나4689 한흥식	아반떼 760702-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9 번지 16호 25/1	포항시 남구 해도 1동 33-207 남동수신경외과 영 도로상에	포항시 북구청사회, 건교, 세무 포항시청교행, 환 위 포항북부경찰서경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차등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북부지사징수 서울 특별시양천구청교지 서울특별시강남구청교지 포항시남구청건교
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포항시의회공고 제 5호

第156回 浦項市議會(第1次 定例會) 集會公告

地方自治法 第44條 및 같은법 시행령 第54條, 浦項市議會 會期와 그 運營 等に 關한 條例 第4條의 規定에 따라 第156回 浦項市議會(第1次 定例會)를 다음과 같이 集會함을 公告합니다.

日時 : 2009年 6月 22日(月曜日) 午前 11時 30分

場所 : 浦項市議會 本會議場

2009년 6월 12일

浦項市議會議長 崔 榮 萬